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31

발의연월일: 2024. 7. 9.

발 의 자:서삼석·박희승·임호선

윤준병 · 송옥주 · 복기왕

이병진 • 박수현 • 위성곤

박지원 • 정준호 • 문대림

정진욱 · 김영진 · 김문수

안도걸 • 조계원 • 신영대

이개호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·시행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(이하 "초과생산량"이라 함)이 생산량의 3%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%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미곡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차이만큼 매입하게 할 수 있음.

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예상생산량(약 368.4만 톤)이 전 년대비 2.17%가량 감소하였으며, 2024년 쌀 추정수요량은 전년 대비 1만 3,000톤 늘어난 362만 톤으로 증가했지만,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,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,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.

또한 지난 2020년 쌀 1포대 당 목표가격으로 20만원으로 규정했지만, 임금·유류 등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수확기인 10월 말 평년 가격은 19만 6,656원 수준으로 목표가격을 돌파하기는커녕 2024년 5월 기준 18만원 이하로 무너짐.

특히 현 정부는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국민의 요구로 마련된 「양 곡관리법」 개정안에 대해 쌀 과잉 공급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식량 정책에 대한 무관심한 대처를 확인함.

이에 종전의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6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항 본문 중 "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"을 "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"으로, "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"를 "생산량(이하 이 조에서 "초과생산량"이라 한다)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할 수 있다"를 "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미곡을 매입할 때 미곡가격 안정을 위하여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 이상을 매입하게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.

- 1.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
- 2.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100분의 5 이상 하락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) ① ~ ③ (생 략) 수급 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 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 는 농업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 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. 다만.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 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량(이하 이 조에서 "초과생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량"이라 한다)을 매입하게 하 여야 한다. -----제1호 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 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제2호에 해당되어 미곡을 매입 수 있다. 할 때 미곡 가격 안정을 위하 여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 이 상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. <신 설> 1.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 과생산량이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

	예상되는 경우
<u><신 설></u>	2.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
	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시기
	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100
	분의 5 이상 하락한 경우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